



2018년 7월 17일

수 신 : 남서울경전철 주식회사

참 조 : 정영호 부장님

제 목 : 법률 의견 송부(Our ref: N511FG, 표지 포함 : 5 면)

귀사의 질의(주무관청이 철도차량 제작 감독을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에 대하여 검토를 마치고 별첨과 같은 법률 의견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의 건 서

법무법인 광장 (Lee & Ko)

변호사 고 훈

변호사 정 원 식

의 건 서

I.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1. 귀사는 2015. 8. 12. 서울특별시(이하 “주무관청”)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하 “본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본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본건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 「철도안전법」 (이하 “철도안전법”) 제7조 제5항¹에 따라 고시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45호)(이하 “본건 고시”) 제12.8.1조²는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동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차량 제작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거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사는 본건 고시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 선정에 관한 발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한편, 주무관청과 귀사는 본건 고시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 감독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본건 실시협약 재무모델상 감리비 항목에 포함된 차량감리비로 대체함으로써 총사업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¹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 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²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 철도차량 제작 감독

12.8.1 제작 감독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동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차량 제작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거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귀사는 주무관청이 본건 고시에 따른 철도 차량 제작 감독을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II. 검토 의견

본건 고시 제 12.8.1 조는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동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6 조에 따라 차량 제작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거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 63 조제 4 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선정 주체를 “철도운영자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본건 고시 제 1 조³에 의하면 본건 고시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데, 철도안전법 제 4 조 제 2 항⁴은 “철도운영자등”을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로, 동법 제 2 조 제 9 호⁵는 “철도시설관리자”를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본건 고시 및 철도안전법상의 철도시설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철도안전법 제 7 조⁶(동 조항은

³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 목적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⁴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⁵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⁶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①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

본건 고시의 근거가 되는 조항임)는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 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본건 고시 제 11.2.1 조⁷는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면허 또는 「도시철도법」(이하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법무법인이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을 위한 철도안전법상의 안전관리체계 승인과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는 주무관청이 아닌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무관청을 본건 고시 및 철도안전법상의 철도시설관리자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주무관청이 본건 고시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 감독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발주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사료됩니다(참고로 다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에서 철도시설관리자를 사업시행자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⁸).

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의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체계가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 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승인방법, 검사기준, 검사방법, 신고절차 및 고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⁷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1.2 철도사업면허

11.2.1 철도사업면허 취득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면허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⁸ 참고로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3조(용어의 정의) 제68호에서는 “철도

이상의 내용을 귀사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시설관리자”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9호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시행자를 철도시설관리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